

종합허가과

| 연번 | 세부사업명 |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1 | 시민중심 인허가 행정 추진 | |
| | 1-1 | 원스톱 민원처리 체계 강화 |
| | 1-2 | 인.허가 처리기간 단축률 제고 |
| 2 | 공장설립승인 사전컨설팅 활성화 | 신규 |
| 3 | 건축허가 문자알림 서비스 시행 | 신규 |
| 4 | 지역건설산업체 참여 활성화 방안(민간건축) | 현안 |

1

시민중심 인·허가 행정 추진

▷(필요성) 복잡한 인·허가 절차의 문턱 낮추기, 처리기한 지연 예방 등 시민 중심의 민원 처리를 통해 인·허가 업무 만족도 제고

▷(추진방향)

- 원스톱 인·허가처리를 통한 시민편의 증진 및 행정신뢰도 제고
- 복합민원 의제처리 활성화를 통한 인·허가 처리기간 단축
- 복잡하고 다양해진 민원환경에 대응하여 적극적 인·허가행정 구현

□ 주요내용

1-1. 원스톱 민원처리 체계 강화

- 기 간 : 2026. 1 ~ 12월 (연중)
- 내 용
 - 허가전담부서(종합허가과)를 중심으로 타 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
 - 민원실무종합심의회 운영
 - 민원관련 인·허가 담당자 합동현장 점검을 통한 신속 처리
- 추진계획
 - 자체 업무 연찬 및 친절 교육 실시 : '26. 분기별
 - 민원실무종합심의회 운영 활성화 : 연중(수시)

1-2. 인·허가 처리기간 단축률 제고

- 기 간 : 2026. 1 ~ 12월 (연중)
- 내 용
 - 유기한 복합민원을 대상으로 처리현황, 단축률, 협의부서 회신 기간 준수율 등 분기별 모니터링을 통해 신속정확한 업무 추진
 - 협의부서(기관)와의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
- 추진계획
 - 인·허가 민원 처리 단축률 분석 : '26. 분기별

1. 사업개요

□ 필요성

- 복잡한 공장설립 절차로 입지선정 등에 애로를 겪는 민원인들의 행정 접근성 및 인허가 업무 만족도 제고
- 인·허가 사전컨설팅을 통해 민원인 부담 경감 및 설립절차 효율화

□ 주요내용

- 대 상 : 공장설립(신설·증설·등록변경 등) 신청 민원인
- 내 용
 - 공장업종·입지상황 등을 고려한 맞춤형 SELF-Checklist 제공
 - 민원서류 검토 후 허가기관 협의사항 사전 확인 및 절차 안내
 - 입지선정부터 인·허가 승인까지 연계되는 통합 컨설팅 제공
 - 공장설립지원시스템(Factory On) 연계, 비대면 처리 활성화

2. 세부추진계획

- SELF-Checklist 양식 개발 및 홈페이지 게시 : '26. 2월
- 사업 홍보 및 민원인 안내 : '26. 3월 ~
- 사전검토 컨설팅 서비스 제공 : '26년 연중

3. 기대효과

- 민원인의 설립비용·시간 부담 완화로 인허가 성공률 및 만족도 제고
- 관계기관 협의 절차 간소화 및 행정처리 효율성 향상

1. 사업개요

□ 필요성

- 대부분의 건축 인·허가 민원이 설계사무소 대행을 통해 처리되고 있어, 민원인이 인·허가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직접 파악하기 어려워 잦은 민원이 제기됨
- 건축허가 진행상황에 대한 자동화된 실시간 직접 알림 서비스 필요

□ 주요내용

- 운영기간 : 26. 1. ~ 12. (연중)
- 대 상 : 세움터 상 등록되어 있는 건축 인허가 민원
- 방 법 : 민원처리 및 보완요구시 문자(SMS) 통보 알림
- 내 용 : 당초 설계자에게 문자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던 사항을 민원인(건축주)에게도 안내·통보

2. 세부추진계획

- 건축허가 민원처리 과정을 민원인에게 문자(SMS) 안내통보

3. 기대효과

- 민원처리 실시간 알림으로 민원진행상황 파악에 대한 편의제공
- 반복적인 처리 문의 감소로 인한 업무담당자 업무부담 해소
- 민원처리 진행과정을 실시간 공유하여 공공서비스 신뢰도 강화

1. 사업개요

□ 필요성

- 건축법 제27조에 따라 허가권자는 허가·사용승인 시 현장 조사·검사 및 확인 업무를 건축사에게 대행 가능
- 평가에 의한 업무대행자 차등 지정으로 건설한 시공 확보와 지역 산업 활성화에 기여

□ 주요내용

- 근거법령 : 구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제3조
- 기 간 : 26. 1. ~ 12. (연중)
- 대 상 : 연면적 2,000㎡ 이상 민간 건축허가 민원
- 내 용 : 사용승인시 지역건설산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평가 후, 업무대행자 차등 지정으로 지역 건설업체 활용 유도

2. 세부추진계획

- 업무절차 : 사용승인 접수(건축주) → 업무대행자 지정(허가권자) → 업무대행자 현장 확인(대행자)
- 추진방법
 - (연중) 건축허가·착공·사용승인 시 지역건설업체 참여 점검
 - 건축허가 시 : 연면적 2,000㎡ 이상의 건축시 허가조건 부여
 - 착공신고 시 : 지역건설산업체 활성화 계획서 제출
 - 사용승인 시 : 지역건설산업체 활성화 추진실적 제출
 - ⇒ 지역건설산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업무대행자 차등 지정

- 합산 점수 60점 이상 : 업무대행자 1명 (현행 유지)
- 합산 점수 30점 이상 ~ 60점 미만 : 업무대행자 2명
- 합산 점수 30점 미만 : 업무대행자 2명 + 입회 공무원 1명

3. 기대효과

- 지역건설업체 참여를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향상